

『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(안)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재안이유

-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되어 동법 제11조에 조례로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
 - 구 성 :
 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함
 -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.
 -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구미소방서장, 구미경찰서장,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장, 구미교육청교육장,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 -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등 재난관리에 경험이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
 - 기 능
 -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·
 -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의결
 - 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계획 심의
 -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 · 조정
 -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처리
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- 운 영
 - 회의 :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
 - 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
4. 참고사항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5. 검토의견

-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에 조례로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함이며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,
 - 위원장 1인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,
 - 또한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,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